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0호

2008년 8월 8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9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10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617호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공모 공고 3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62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3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구의회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인천광역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 표 2]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6조 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를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로 한다.

[별표] 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제10조 관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과 목		구 분	기 준	사용료 등 (범위내)	감면대상 및 비율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독서실, 기타 부대시설)	수 시	무 료		
각종 프로 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등록장 애인은 전액면제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9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0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범위내)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율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율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0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3.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2장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

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단체·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⑤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자문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3.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5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제2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녹지경관과장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경관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경관관리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를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폐기물을”로 한다.

별표 2의 부과 항목란 제2호 중 “법 제12조 관련”을 “법 제15조 관련”으로

하고, 고, 제3호 중 “법 제12조 관련” 을 “법 제13조 및 제15조 관련” 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조치명령 절차 등)”을 “(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위반행위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 고
	1차	2차	3차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5. 비용을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만원)			비고
	1차	2차	3차	
8.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제3항)	50	100	300	
9. 빈용기보증금 중 미반환보증금을 법에 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법 제22조의2제1항)	200	250	300	
10.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 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한 자(법 제25조의2)	100	200	300	
1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2.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13.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				
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200	250	300	
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00	200	300	
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조한 자	200	250	3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이행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조치명령 및 기간		⑦ 이행완료 예정 일		
⑧ 조치명령 내용				
⑨ 이행완료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 - 617 호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공모 공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예술성은 물론 환경친화적 건축으로 건축문화 발전과 개성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제3회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명 칭 :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2. 주 최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공모 대상 및 시상

가. 공모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한 건축물에 한하며, 공모일 이전 5년 이내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나. 선정 범위는 주거(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을 분리하여 각 최우수 1작, 우수 1작으로 함.

다. 시상 대상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로 하며,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는 상장수여 및 표지판(대상건축물) 설치와 모든 참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라. 수상작 선정은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함

4. 신 청 인 : 위 공모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

5. 신청 및 접수 : 2008. 08. 20 ~ 09. 30(근무시간 내)

6. 제출서류

가. 공모신청서 1부(공모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검토출장소,

서구 관내 각 동사무소, 인천건축사협회 사무실에 비치)

나. 기본 설계도서 1부(건축개요, 건물전경사진, 배치도, 평면도 및 입면도)
다. 작품설명서 1부(규격 및 매수 제한 없음)

7. 제출기관 및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본관동 3층)

8. 수상작 선정 : 2008. 10월 하순(수상작 개별통지, 11월 시상 예정)

9. 신청자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음

나. 공모일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032-560-4723)로 문의
하시기 바람.

< 붙임 3 >

접수번호	제	호
------	---	---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 공모신청서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작 품 개 요 ◆

작 품 명				신청분야	주거, 일반
건 축 주				대지위치	
설 계 자				사무소명	
시 공 자				회 사 명	
건 축 내 용					
건축허가일	(제 호)			사용승인일	
규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용 도	
사용 재료	외장재 및 기타			주요구조재	
				주요지붕재	
특기사항(본 작품설계 및 시공에 반영된 특기사항)					

200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62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을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인천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동기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08. 08. 07. ~ 2008. 08. 21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시책관리팀(☎560-5902)
6. 의견서제출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시책관리팀)
7. 대상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6외 364필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시책관리팀(☎560-59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